

제10장 통신 서비스

제10.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상용 이동 서비스란 이동무선수단을 통하여 제공되는 공중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원가지향이란 원가에 기초함을 말하며, 합리적인 이윤을 포함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설비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다른 비용산출방법을 수반할 수 있다.

최종이용자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외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하는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가입자 또는 최종소비자를 말한다.

필수 설비란 다음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가.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는 것, 그리고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것

상호접속이란 하나의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 모바일 로밍 서비스란 최종이용자가 자신의 본국 공중 통신 망이 위치한 영역 밖에서 음성, 데이터 또는 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위하여 자신의 본국 모바일 단말기 또는 그 밖의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들 간 상업적 계약에 따라 제공

되는 상용 이동 서비스를 말한다.

전용회선이란 특정 이용자의 전용 사용 또는 이용가능성을 위하여 따로 둔 둘 이상의 지정된 지점 간 통신 설비를 말한다.

면허란 어떠한 인이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러한 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양허, 허가 또는 등록을 포함하는 모든 승인을 말한다.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를 말한다.

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비차별적이란 동종의 상황에서 동종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그 밖의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한다.

번호이동성이란 동일한 범주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 간에 전환할 때 동일한 전화번호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 통신 서비스 최종이용자의 능력을 말한다.

물리적 설비 병설이란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통제하고 사용하는 구역에서 장비를 설치, 유지 또는 수리하기 위한 공간에 대한 접근을 말한다.

공중 통신 망이란 명시된 망 종단점 간에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공중 통신 기반을 말한다.

공중 통신 서비스란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당사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또는 사실상 요구되는 모든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한 서비스는 고객의 정보를 형태나 내용 면에서 종단 간의 변경 없이 둘 이상의 정해진 지점 간의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을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전화 및 데이터 전송을 포함할 수 있고, 부가서비스는 제외한

다.

통신이란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한다.

통신규제기관이란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통신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기관들을 말한다. 그리고

이용자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최종이용자 또는 공급자를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을 포함하여 통신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에 적용된다.

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조치

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한 의무에 관한 조치, 그리고

다.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관한 그 밖의 조치

2. 이 장은 케이블 또는 방송 서비스 공급자가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케이블 또는 방송 배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을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기업이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 구축, 취득, 임대, 운영 또는 제공하는 것, 또는

- 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이나 케이블 배급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이 자사의 방송 또는 케이블 설비를 공중 통신망으로서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제1절

공중 통신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제10.3조

접근 및 이용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전용회선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또는 자국의 국경을 건너 제공되는 모든 공중 통신망 및 서비스에,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조건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 가. 공중 통신망에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하고 부착하는 것
 - 나. 소유 또는 전용 회선을 통하여 개별 또는 복수의 최종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다. 소유 또는 전용 회선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국경 간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와 접속하거나,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전용 또는 소유 회선과 접속하는 것
 - 라. 교환, 신호, 처리 및 변환 기능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 마.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선택한 운용규약을 사용하는 것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사내통신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또는 자국의 국경을 건너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포함되거나 달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가. 메시지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나.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최종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

다만,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중 통신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가.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의 공공 서비스 책임, 특히 그들의 망 또는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 또는

나.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

6. 그들이 제5항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조건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인터페이스규약을 포함하여,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하여 특정의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나. 필요한 경우,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요건, 그리고

- 다. 망과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과 그러한 장비를 그러한 망에 부착하는 것에 관한 기술적 요건

제2절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

제10.4조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 관한 의무

상호접속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와의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2. 제1항을 이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상호접속협정의 결과로 얻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 및 최종이용자의, 또는 이들에 관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정보를 공중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보장한다.

번호이동성

3.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및 그 당사국이 지정한 그 밖의 서비스를 위한 번호이동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전화번호에 대한 접근

4.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전화번호에 대한 접근이 비차별적으로 부여되도록 보장한다.

제3절
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추가 의무¹

제10.5조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대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다음에 관하여, 그러한 지배적 사업자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자회사 및 계열사, 또는 비계열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 가. 동종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공급, 요율 또는 품질, 그리고
- 나. 상호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이용가능성

제10.6조
경쟁보장장치

1. 각 당사국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
- 나.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¹ 제10.5조, 제10.8조 및 제10.10조부터 제10.12조까지는 상용 이동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하여 한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 다. 다른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하여 그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 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지 않는 것

제10.7조

재판매

각 당사국은 경쟁을 촉진하거나 최종이용자의 장기 이익에 혜택을 주기 위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어떠한 공중 통신 서비스가 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재판매용으로 제공되어야만 하는지를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당사국이 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서비스가 재판매용으로 제공되어야만 한다고 결정한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서비스의 재판매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10.8조

망 요소 세분화

-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을 세분화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제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자국의 통신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부여한다.
-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요구되는 망 요소와 그러한 요소를 획득할 수 있는 공급자를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10.9조

상호접속

-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설비 및 장비를 위한 상호접속을 그 지배적 사업자의 망 내의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상호접속은

- 가. 비차별적인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요율에 따라
- 나. 자신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그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품질로
- 다.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요구하지 않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그리고
- 라. 요청에 따라,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다수의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제공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의 설비 및 장비를 그 지배적 사업자의 설비 및 장비와 상호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다음 선택사항 중 최소한 하나를 통하여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 가.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이 승인한 표준상호접속제안 또는 그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일반적으로 제의하는 요율 및 조건을 포함하는 그 밖의 상호접속 제안
- 나. 발효 중인 상호접속협정의 조건, 또는
- 다. 상업적 교섭을 통한 새로운 상호접속협정

3. 각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적용 가능한 절차가 공개적으

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자국의 상호접속협정 또는 표준상호접속 제안이나 그 밖의 상호접속 제안을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보장한다.

제10.10조

전용회선 서비스의 공급 및 가격 책정²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요율로 공중 통신 서비스인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2. 제1항을 이행할 때,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공중 통신 서비스인 전용회선 서비스를 용량 기반의 그리고 원가지향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 부여한다.

제10.11조

설비 병설

1. 제2항 및 제3항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상호접속 또는 세분화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에 필요한 장비의 물리적 설비 병설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2. 물리적 설비 병설이 기술적 이유 또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과 원가지향적 요율로 대안적 해결책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² 이 조는 당사국이 지배적 사업자에게 세분화된 망 요소로서 전용회선 제공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각 당사국은 어느 구역이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당사국은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그러한 제한을 명시해야 한다.

제10.12조

전주, 관로, 도관 및 선로설치권에 대한 접근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한, 지배적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전주, 관로, 도관, 선로설치권 및 그 밖의 구조물에 대한 접근을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전제로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한 조건과 요율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접근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전주, 관로, 도관, 선로설치권 또는 그 밖의 구조물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절

그 밖의 조치

제10.13조

독립적인 통신규제기관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모든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도록 보장한다. 통신규제기관의 독립성과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그러한 공급자에 대하여 지분³을 소유하거나 운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통신규제기관 외의 당사국 정부기관이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영 또는 경영 역할을 유지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협약, 공중 통신망 및 서비스와의 상호접속, 요율, 그리고 비정부 공중 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할당 또는 배분에 관한 결정 및 절차를 포함한 자국의 규제 결정 및 절차가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도록 보장한다.

제10.14조 보편적 서비스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려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정의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의무는 그 자체로 반경쟁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의무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 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그 당사국이 정의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10.15조 면허

1.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면허가 요구되는 경우, 당사국은 다음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가. 자국이 적용하는 모든 면허 기준 및 절차

나. 면허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그리고

다. 면허의 일반적인 조건

2. 당사국은 결정이 내려진 후,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신청 결과를 통보한다.

3. 당사국은 요청에 따라, 신청인 또는 면허권자에게 다음에 대한 이유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가. 면허 거부

나. 면허에 대한 공급자별 조건의 부과

다. 면허 갱신 거절, 또는

라. 면허 취소

제10.16조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1. 각 당사국은 주파수, 번호 및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 통신 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자국의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2. 각 당사국은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분배한 주파수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며 주파수를 관리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제8.5조(시장접근)가 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적용되든지 또는 제8.2조제3항(적용범위)의 운영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에 적용되든지 간에, 그 자체로 제8.5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아니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수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전파 및 주파수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그 당사국은 제8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그 밖의 규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한 권리는 현재 및 미래의 수요와 전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을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4. 상업 통신 서비스용으로 전파를 분배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경쟁 촉진을 포함하여 공익을 고려하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존하도록 노력한다.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상업적 지상 통신 서비스용으로 전파를 할당할 때 시장에 기초한 접근방식에 일반적으로 의

존하도록 노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상업용 전파를 할당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경매, 행정적 유인 가격책정 또는 비면허 사용과 같은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17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법안 또는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 그 기관이 자국의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관련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관련 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가. 서비스 요율 및 그 밖의 조건

나. 그러한 망 및 서비스와의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규격

다. 그러한 접근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의 준비 및 채택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

라.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부착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마. 통보 또는 면허 요건이 있으면, 그러한 요건

제10.18조

국제기구와의 관계

양 당사국은 통신망 및 서비스의 국제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위한 국제 표준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국제전기통신연합과 국제표준화기구를 포함하여, 관련 국제기구의 작업을 통하여 그러한 표준을 증진할 것을 약속한다.

제10.19조 기술 선택의 유연성

1. 당사국은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기술을 선택할 유연성을 갖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공중 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한하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치는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안되어야 하고,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입안, 채택 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10.20조 국제 모바일 로밍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의 무역 성장 촉진 및 소비자 복지 향상에 일조할 수 있는 국제 모바일 로밍 서비스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요율 증진에 대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2. 당사국은 국제 모바일 로밍 서비스에 대하여 투명성과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 가. 소비자가 소매 요율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 나. 소비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한쪽 당사국의 영역을 방문할 때 자신이 선택한 기기를 이용하여 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로밍에 대한 장애를 최소화한다.

제10.21조 통신 분쟁의 해결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국의 통신규제기관 또는 분쟁해결기관에 시의적절하게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련 통신규제기관의 최종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모든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 당사국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당국에 의하여 그러한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의 관련 기관이 달리 판정하지 않는 한, 재심사 신청이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근거를 구성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제10.22조 규제에 대한 접근방식

1. 양 당사국은 통신 서비스 공급에 폭넓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소비자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경쟁시장의 가치를 인정하며, 유효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규제 필요와 접근방식이 시장마다 다름을 인정하고 각 당사국이 이 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이러한 측면에서, 양 당사국은 당사국이 다음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 가. 그 당사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문제에 대한 예측으로 또는 이미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규제에 참여할 수 있다. 또는
 - 나. 특히, 자체 망 설비를 소유하지 않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처럼 경쟁적이거나 경쟁적일 가능성이 있는, 또는 진입장벽이 낮은 시장 부문에 대해서 시장 원리의 역할에 의존할 수 있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 따라 규제에 대한 참여를 자제하는 당사국은 계속

해서 이 장에 따른 의무의 적용대상이 된다.

제10.23조

집행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10.3조부터 제10.12조까지에 규정된 의무에 관한 당사국의 조치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 권한은 금전적 벌칙, 구제 명령(잠정적 또는 최종적), 시정 명령, 또는 허가의 수정, 정지 또는 취소를 포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제10.24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이 협정의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범위에서 이 장이 우선한다.